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2. 22 선고 2021가단641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임수진

피고B

변론 종결2022. 11. 10.

판결 선고2022. 12. 2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1. 13.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14. 접수 제1235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3.1)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14. 접수

제1235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 1) 원고는 2019. 6. 17. C에게 14,300,000원을 이자 연 12.7%, 지연이자 최대 연 19%, 변제기 2020. 6.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2) 그런데 C은 2019. 11. 20.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3)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16497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9. "C은 원고에게 16,290,958원과 그 중 14,3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12. 22. C에게 송달되어 2021. 1. 5. 확정되었다.

나. C의 부동산 처분행위

- 1) C과 피고는 2013. 5. 28.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 2015년생 및 2017년생인 두 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9. 11. 8. 협의이혼을 하였는바.
- 2) C과 피고는 이혼하면서 미성년인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부인 C로 지정하였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C이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 3) C과 피고는 2019. 11. 13. C과 피고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던 주거로서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등기비용은 C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4) 피고는 2019. 11.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같은 날 접수

제123516호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재산 상태

1)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보유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242,000,000원 정도이다.

2)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보유한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금은 281,977,763원이다.

신용대출	A	2019. 6. 17.	14,300,000	원고 지급명령
담보대출	D	2019. 6. 27.	162,937,454	부채증명원
연체	E	2019. 10. 28.	27,294,180	사실조회 회신
연체	F	2019. 8. 7.	992,000	사실조회 회신
연체	G	2020. 1. 29.	11,511,000	사실조회 회신
연체	H	2019. 10. 25.	1,593,278	사실조회 회신
연체	I	2019. 3. 4.	25,955,324	사실조회 회신
연체	J	2019. 7. 19.	17,000,000	회신서
대출	K	2018. 11. 21.	10,000,000	사실조회 회신
대지급	대구신용보증재단(대위변제일)	2020. 3. 24.	10,394,527	보증/사고원장 회신
합계	281,977,76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동군, 대구 달성군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 이 법원의 L, 한국주택금융공사, D 주식회사, 대구신용보증재단, J 유한회사, I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체결되기 전인 2019.

6. 17.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2) 사해행위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및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와 C의 혼인기간,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 재산으로 하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재산분할로는 상당하지 않은 과대한 것이고, 피고와 C 사이의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씩의 분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281,977,76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24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② 그런데 C과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부담하고 있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모두

C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유지한 채,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만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하였는바, 이러한 협의는 소극재산은 모두 C이 부담하게 하고, 적극재산은 모두 피고가 보유하게 하는 것으로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균형 있게 청산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더욱이 C과 피고는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인 두 명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C로 지정하고, 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도 모두 C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그럼에도 C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주거이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양육비조차 부담하지 않는 피고에게 전부 귀속시키기로 한 것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의미 외에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피고가 C과 혼인하기 전 소유하였던 대구 달성군 M아파트 N호(이하 '별개 아파트'라 한다)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그 소유명의만 C 명의로 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2013. 12. 25.이고, 피고가 별개 아파트를 처분한 것은 2016. 9. 2.인 점, 별개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120,000,000원이었으나, 당시 피고가 위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대출금 77,000,000원을 상환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위 처분 당시 별개 아파트의 순자산 가치는 43,000,000원(=120,000,000원~77,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187,900,000원이므로 별개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이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⑤ 피고는 C의 외도와 불성실한 가정생활 등 C의 일방적인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 C이 혼인기간 중 경제적인 도움을 준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C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도 C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고, 오히려 피고는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점, 이 사건 재산분할협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비용조차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C이 일방적인 유책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협의를 하였으므로, C로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것은 2019. 6.경이고 그 이후 숙려기간을 거쳐 2019. 11. 8.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으로 숙려기간 동안에는 C과 별거를 하였으므로 C의 채무 상황 등에 대하여 피고가 알 수 없었고, 유책 배우자인 C과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갖게 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정이 사해행위가 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와 C의 관계,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14. 접수 제1235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문헌정

별지

3. 24.'는 '2019. 11.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